

| 등록 번호 | 단체명 |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 | 최초 등록일 | 주된사업 | 연락처 | 주관과 | 등록 구분 |
|------------|------------|---------------------------------------|-----|-----|----------------|--|---------------------|-----------|----------|
| | | | 변경전 | 변경후 | | | | | |
| 2012 -6 | 대한건기협 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주경기장 B216호 | 김정수 | 이종환 | '12. 10.19. | ○대국민 생활체육 건기운동 전개 및 보급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 및 건기 대회 개최 등 | 02- 523 -2383 | 체육진 흥과 | 변경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3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오산세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48, 3층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4. 인가취소일 : 2020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3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엘티삼보 주식회사(장태일) ②(주)동아지질(최재우)
 - 나. 전화번호 : ①02-3480-9500 ②051-580-5500
2. 명칭 : 지수재가 삽입된 워터스탑 블록과 스크래퍼를 이용한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지수재가 선행영역 측으로 돌출되게 끼움 설치된 워터스탑 블록을 지하연속벽 조인트 부에 대응하여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선행판넬을 시공한 다음, 후행판넬에 대응하는 후행영역을 굴착하고 후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서 워터스탑 블록에 대하여 스크래퍼를 하강시켜 워터스탑 블록을 선행판넬로부터 탈거 가능한 상태로 스크래핑하는 워터스탑 블록 분리를 위한

사전 작업을 거친 뒤, 선행판넬의 조인트부에 일부 끼워져 고정된 상태인 지수재로부터 워터스탑 블록을 분리 인발하고 나서 후행영역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후행판넬을 시공하는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

<범위>

선굴착된 선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 지수재가 설치된 워터스탑 블록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선행판넬을 시공한 다음, 후행영역을 굴착하고 후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서 스크래퍼를 하강시켜 워터스탑 블록을 선행판넬로부터 탈거 가능한 상태로 스크래핑한 뒤, 선행판넬의 조인트부에 고정된 지수재로부터 워터스탑 블록을 분리 인발하는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9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세부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16조의2)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마다 작성하는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안 제16조의3)

- 안전관리지침의 수립·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 방법,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안 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0조의6)

-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납부·징수하는 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